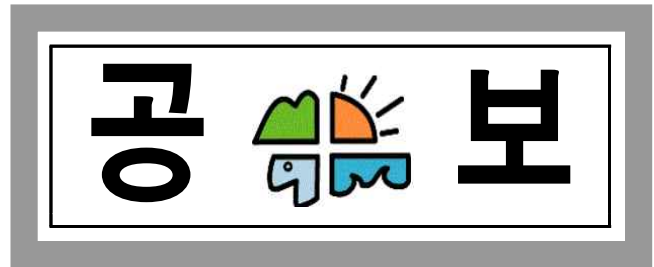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86호 2022년 5월 13일(금)

공 고

- 2022년 속초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2
-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재결신청(공원 2차) 열람공고 · 12

입법예고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2022년 속초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에 따라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속 초 시 장

1. 부과대상지역 : 속초시 하수처리구역 내

2.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2,357,000원/m³

3.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4.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 별 표 :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5. 부담주체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6.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

7. 부과·징수방법

-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 m²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

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계산하여 부과

-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 m²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허가 시에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공고 시행일부터 속초시 공고 제2021-512호(2021.4.30.)는 폐지한다.
- ③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거 시설	단 독 주 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간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 지역의 1일 오수발생 량은 170ℓ/인을 적용 한다.	$N = 2.0 + (R - 2) \times 0.5$	N은 인원(인), R 은 1호당 거실 개수(개)의미 한 다.
		다 세대 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 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 = 2.7 + (R - 2) \times 0.5$	1호가 1거실1)로 구성 되어 있는 경우 2인으 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 생활시설)2), 다중주택3)	7.5ℓ/㎡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을 적용한다.	$N = 0.038A$, 연면적3)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문화 및 취 락 시 설	공 연 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 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 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 장	12ℓ/㎡	150	-	$N = 0.060A$	-
		집 회 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 례식장	12ℓ/㎡	150	-	$N =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 표소	25ℓ/㎡	150	-	$N = 0.125A$	-
		종 교 집 회 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 室), 사당	12ℓ/㎡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 람 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 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 동장	10ℓ/㎡	260	-	$N = 0.050A$	-
		전 시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 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 스	16ℓ/㎡	150	-	$N = 0.080A$	-
		동 식 물 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ℓ/㎡	150	-	$N = 0.08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4	의료 시설	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0.200A	-
		급식시설이 있음	30ℓ/㎡	300		N= 0.15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이 없음	25ℓ/㎡		N= 0.125A	-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 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원	3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5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ℓ/㎡	150	-	N= 0.075A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ℓ/㎡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 원 산정식 적용가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100	-	N= 0.058A (중학교) N= 0.067A (중학교 이외) N= 0.33P	
			주야간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N= 0.100A (중학교) N= 0.116A (중학교 이외) N=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ℓ/㎡	100	-	N= 0.067A N= 0.33P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ℓ/㎡	150	-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ℓ/㎡	20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	140	-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6	운동 시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 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 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15ℓ/m ²	100		N= 0.075A	-
		골프장	30ℓ/m ²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로 가산 한다.	N=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m ²	100		N= 0.200A	-
		테니스 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m ²		N=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m ²		N= 0.010A	
		게이트볼 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m ²		N= 0.005A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m ²		N= 0.003A	
7	업무 시설	일반 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 사	15ℓ/m ²	-	N= 0.075A	-
			금융업소	15ℓ/m ²	-	N= 0.150A	-
			오피스텔	10ℓ/m ²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의 구분이 분명한 경 우 각각 공동주택(아 파트)과 사무소 용도 를 적용한다.	N= 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 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 다.
		공공업무 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 역자치센터, 파출소, 지 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 공단사무소	15ℓ/m ²	-	N= 0.150A	-
			보건소	18ℓ/m ²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N=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5ℓ/m ²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N=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과목 구분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8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 중생활시설 ⁶⁾)	20ℓ/m ²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N=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20ℓ/m ²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N= 0.067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관광펜션	35ℓ/m ²	140	-	N=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ℓ/m ²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m ²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N= 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m ²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ℓ/m ²	320	전체면적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시설 ⁹⁾)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시설 ¹⁰⁾)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ℓ/m ²	140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9	위락 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m ²	250	-	N= 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의 시설 ¹⁰⁾	15ℓ/m ²	100	-	N=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ℓ/m ²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ℓ/m ²	150	-	N= 0.080A	-
10	공업 시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ℓ/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¹¹⁾	15ℓ/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ℓ/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ℓ/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등)	25ℓ/m ²	260	-	N= 0.500A	-
11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¹²⁾ , 주기장 ¹³⁾	25ℓ/m ²	260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 한다.)	N= 0.500A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 한다.)
		(자동차)매매장	15ℓ/m ²	100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N= 0.075A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2	공공용 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갯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ℓ/m²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m²	100	-	N= 0.075A	-
		군대숙소	7.5ℓ/m²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m²	260	-	N= 3.400A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마을회관	12ℓ/m²	150	N= 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ℓ/m²	100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ℓ/m²	250	N= 0.075A	-
			공중화장실	170ℓ/m²	260	N= 3.400A	-
			지역아동센터	6ℓ/m²	100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에너지 공급, 통신 서비스 제공, 급수 배수 및 관련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ℓ/m²	100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3	모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6ℓ/m²	150	-	N= 0.080A	-
14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ℓ/m²	260	-	N= 0.050A	-
		어린이회관	6ℓ/m²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ℓ/m²	150	-	N= 0.080A	-
		휴게소	20ℓ/m²	260	-	N= 0.400A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하고,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

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4)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15) A는 연면적(m^2),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재결신청(공원 2차) 열람공고

속초시와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공동 시행하는 「속초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내용을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2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 : 속초시 교동 785-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현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78, 502호(고운동, 세종 스마트큐브Ⅱ)
4. 사업의 내용 : 영랑근린공원 조성
5. 수용재결기관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22.05.12. ~ 2022.05.27.
7.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속초시청 공원녹지과(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033-639-2803)
 -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254(동명동 450-193) 2층 영랑공원개발(주) 보상사무소 ☎ 033-631-9633
8. 수용재결 대상 : 별지 참조 (※관계서류 : 열람장소 비치)
9. 의견서 제출 : 수용재결신청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중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제출바랍니다.
 - (1) 열람기간 경과 후에는 의견서 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열람장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①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공원(2차))			
②면입 토지 및 물건	토 지 소 재 지			
③ 당 사 자 (의견제출인)	성명	(인)	소유자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④의견				
⑤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내역(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2차))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공부	현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속초시 금호동	617-27	617-27	전	임	83	83	1/1	신*웅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			
2	속초시 금호동	617-19	617-19	전	전	1,177	693	1/1	이*익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690-1 동원타운 105동 703호			
3	속초시 금호동	산 275-13	산 275-19	임	임	62	62	1/1	이*익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690-1 동원타운 105동 703호			
4	속초시 금호동	617-26	617-64	임	임	1,067	1,067	1/1	(주)신** ***** 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금호동)			
5	속초시 금호동	617-43	617-68	전	임	13	13	1/1	(주)신** ***** 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금호동)			
6	속초시 금호동	산 274-1	산 274-1	임	임	13,48 8	3,081	1/1	(주)신** ***** 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금호동)			
7	속초시 금호동	산 279	산 279-2	임	임	11,66 4	11,66 4	1/1	(주)신** ***** 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금호동)			
8	속초시 교동	787	787-2	답	답	227	227	1/1	(주)신** ***** 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금호동)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2022년 6월 경 입주 예정으로 조양동 통·반을 증설하여 효율적 동 행정관리와 주민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안 별표]
 - 조양동 2개통 6개반 신설

구 분		조 정 내 역		증 감 내 역
		조 정 전	조 정 후	
속초시 전체	통 수	244	246	2
	반 수	1,205	1,211	6
조양동	통 수	55	57	2
	반 수	272	278	6

- 별지 조문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33-639-2137 / 팩스 033-639-2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033-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별의 총 및 조양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246	1,211	
조양동	57	278	

별표 중 조양동의 제55통란 다음에 제56통 및 제57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양동	제 56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101동 아파트내 상가
		제 2 반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102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103동
조양동	제 57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104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105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106동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요건란 중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를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를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